

<p>□ 기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「제조담배도매업」 사무를 조례로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. (안 별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신규등록, 변경등록 및 휴업·폐업신고의 수리</li> <li>(2) 등록취소, 영업정지, 명령, 관계장부, 서류의 확인, 열람, 과태료부과·징수</li> </ul> <p>□ 「폐기물 재활용」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.(안 별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변경신고, 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의 수리</li> <li>(2) 업무에 관한 보고·자료의 제출명령, 관계서류, 시설, 장비 등 검사</li> <li>(3)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li> </ul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□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※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(사무의 위임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생략</li> <li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,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</li> <li>③~④ 생략</li> </ul> <p>□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개정조례안의 제조담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사무(등록, 휴·폐업신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5개 단위사무)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이나 담배사업법 개정('99. 12. 31)으로 본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·도지사 고유사무로 되어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고</li> <li>○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사무(재활용신고, 휴·폐업신고,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5개 단위사무)는 폐기물관리법 개정('99. 8. 9)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기존의 폐기물에 관한 상당의 관련사무가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</li> </ul>	<p>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효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제석 위원 10명, 출석 위원 7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561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0. 5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 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1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 건립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및 국·내외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□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.(안 별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)</p> <p>※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(수유동 122-3, 2000. 7 개관 예정)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(시흥동 558-1 와 11, 2000. 7 개관 예정)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(마장동 798-1, 2000. 7 개관 예정)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(쌍문동 19-12,</p>	의안 번호	561
의안 번호	561		

30 (第119回-第3次)

<p>2000. 9 개관 예정)</p> <p>□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.(안 별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관)</p> <p>※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(명동2가 50-14, 2000. 5 개관 예정)</p> <p>□ 새로이 설치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관리·운영을民間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.(안 부칙)</p> <p>다. 참고사항</p> <p>□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5조, 제95조 ○ 제135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○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(생략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④(생략)</p> <p>□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p>○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 자치구, 1 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금년 7월 중 개관예정으로 있는 강북, 금천, 성동, 도봉 노인종합복지관과 국·내외 청소년들간의 대화, 워크숍, 문화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임차하여 5월 중 개관예정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</p>	<p>로의 설치근거를 정하고</p> <p>○ 동 조례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민간위탁사무명에 상기 4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○ 다만, 향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공사착공 또는 시설확보(취득 및 임대차)전에, 동 공공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건은 운영개시 전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효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0명, 출석 위원 6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(이하 "소기업 등"이라 한다)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을 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.</p> <p>2. "소기업 및 소상공인"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소기업</p>
--	---